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12

발의연월일: 2025. 3. 19.

발 의 자: 박지원·허성무·박균택

정진욱 • 권칠승 • 이재관

박해철・김 윤・양부남

정동영・황명선・임미애

김승원 · 김준형 의원

(14위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·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,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 1조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이러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지원 정책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 중 정부출연금을 5조원으로 상향하되, 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매년 1조원씩 순차적으로 상향·조정하고,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시한규정을 삭제함(안 제23조제1호 및법률 제18545호 부칙 제2조제2항 삭제).

#### 법률 제 호

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호 중 "1조원"을 "5조원"으로 한다.

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에 관한 특례)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제2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회계연도에는 2조원, 2027회계연도에는 3조원, 2028회계연도에는 4조원으로 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3조(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)	제23조(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)		
지방소멸대응기금은 회계연도			
마다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			
조성한다.			
1. 정부출연금 <u>1조원</u>	1 <u>5조원</u>	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		
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	법률 제18545호 지방자치단체		
기금관리기본법 부칙	기금관리기본법 부칙		
제2조(유효기간) ① (생 략)	제2조(유효기간) ① (현행과 같		
②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의	음)		
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	<u>&lt;</u> 삭 제>		
203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			
<u> 가진다.</u>			